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5-208-19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	대한 시정조치에 🤄	관한 건
피	심	인	네츄럴비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 2	설 여 원	ଠା	2025 4 23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D(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상시 종업원 수
네츄럴비자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찰로부터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를 접수('24.4.4.)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비자 발급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자료제출일 기준 약 건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구분	항목	기간	건 수(건)
	(필수)		(건)
	Ä		(건)

보유기간 만료 정보는 모두 폐기, 이후 자료제출일까지 접수된 건

¹⁾ 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메일/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파쇄기 고장으로 별도의 소각 또는 파쇄 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려('24.4.3. 10시경)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1) (유출 내용) 비자 발급 대행 신청자 개인정보*약 903명

- * (비자발급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여권번호, 여권사본, 가족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장정보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포함 약 227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아 유출사실을 인지('24.4.3. 13시경)하였으나, 경찰 측이 유출된 종이 서류들을 모두 회수*하여 유출 규모 및 명단 파악이 불가한바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유출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

* 회수된 문서들은 위원회로 사건 이관 시 함께 발송

3. 개인정보의 취급 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비자발급신청서, 여권사본 등)*를 비자 발급 완료 등 처리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Ж

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비자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마스킹 처리, 파쇄 또는 소각 등)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경찰 조사 시 유출된 서류들이 전량 회수되어, 유출 규모 및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출 통지의 경우 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을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야 하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4년 9월 5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자 발급 완료 등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서류들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 이다.

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3항·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별도의 마스킹 처리 또는 파쇄·소각 등 안전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및 안전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²⁾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일부개정, 2023.9.22. 시행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1항]

피심인은 유출된 서류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수되어, 정확한 유출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는 등)를 갈음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시행령³⁾(이하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아.	법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上.	법 제34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³⁾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 '조사협조(20%이내)' 및 '자진시정 등(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	과태료 금액 (단위:만 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금액 (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보호법 제21조제1항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	420	180
보호법 제24조제3항·제29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	420	180
보호법 제34조제1항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	600	-	420	18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제29조,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1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4월 23일

위원장 김진환

위 원 김일환

위 원 김휘강